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순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7
----------	-----

발의연월일 : 2025년 3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오중균, 이호건,
임태근, 정기혁, 정병기, 정해숙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학교의 체육 시설 개방에 따른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였으며, 스포츠클럽 지원, 보조금 환수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 규정에 “학교체육시설” 신설(안 제2조제4호)

나.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보조금 환수 조문을 신설함(안 제7조, 안 제8조)

라. 학교의 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문화체육과

라. 입법예고: 2025. 4. 3. ~ 2025. 4.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3항 후단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

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2항 중 “관련 내역”을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으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지도·감독”을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으로, “있다”를 “있으며,”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결과를 보고”를 “그 조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중등교육

법」과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3.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제1호-----.
<신설>	4.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운영 등) ① · ② (생략)	제4조(체육시설의 운영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5조(회계관리) ① (생략)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련 내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과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

③ -----

-----.

--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보조금의 교부 등) ① 구청장-----

-----.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회계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
-----.

제7조(지도·감독) ① -----

며, 직접 출입하여 검사할 수 있다.

<신 설>

② 구청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 설>

--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빙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
----- 있으며, -----
----- 그 조치 결과
를 구청장에게 제출-----
-----.

④ -----
제3항-----
-----.

제8조(환수) 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

<신 설>

4조 및 제35조에 따른다.

제9조(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

① 법 제16조에 따라 「초·중
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의 장이 학교체육
시설을 스포츠클럽에 개방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학교체육
시설의 보수 및 유지 등에 필요
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개방된 학교체
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학교
측의 개방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